

「울릉군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25.

울릉(군)수

1. 제정 이유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물가안정
및 주민생활안정을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지원 품목, 지원 대상, 지원 범위(안 제3조 ~ 제5조)
- 다. 신청 및 지급절차, 지급중지 및 반환(안 제7조 ~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5. ~ 11. 14.

5. 의견제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 18:00까지 의견을 울릉군수 (참조 : 경제투자유치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xiuxiuji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 경제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40222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울릉군청 경제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팀
☎)054-790-6272 / Fax)054-790-6279

○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사항	찬·반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찬성 이유로 찬성
		반대 이유로 반대 및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붙임] 제정조례안

울릉군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법』 제4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도서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필수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필수품”(이하“생필품”이라 한다)이란 육지에서 울릉으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및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2. “해상운송비”란 항만 선임비, 상·하역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3. “운송자”란 생필품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송하는 업체 및 단체, 개인을 말한다.
4. “선임비”란 육지에서 도서로 생필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선박의 운임비를 말한다.
5. “현지운송비 등”이란 육지가 아닌 울릉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품목) 운송비 지원 품목은 육지에서 울릉으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과 군수가 따로 정한 품목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운송비 지원 대상은 제9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생필품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하는 운송자 또는 판매자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해양수산부 항만하역요금표에서 정하는 항만 상·하역요금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선정) 군수는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자를 공모로 선정함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 또는 판매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문 업체와 공급처 간 생필품 거래명세표

2. 주문 업체와 운송자 간 생필품 운반물량확인서

3. 그 밖에 생필품 운송 또는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④ 군수는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해상운송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해상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1. 협약 체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해상운송을 거부하거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4. 판매자가 생활필수품 판매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 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9조(업무협약 체결) 군수는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운송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해상운송 사업계획서 (제7조 제1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업규모 :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산출내역
	계	국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세부사업명				

- 사업신청자 :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

4. 사업비 명세

운송품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첨부서류 1.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

울릉군수 귀하

